

□ 2000년법정 넷째 날(2000년 12월 11일 오전)

## 최근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에 관한 국제공청회

### ● 개회사

#### △ 바우넷 재팬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겠다는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증언을 해주신 덕분에 전범에 관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3일 동안 8개국의 70여 명의 증인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전후 전범재판에서 성범죄에 대한 것을 처벌하지 않았기에 이제 이것을 처벌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여성들은 납치당하고 강간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등지에서 일어났던 성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미군기지가 있는 곳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연대화도 중요합니다.

#### △ 우먼스 코커스

3일 동안 역사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전쟁 중 성범죄에 대해서 용기있게 증언하였고 모두들 감탄하고 있다. 각 국 대표단들은 자신들 국가에 속한 이들을 위해 법적인 바탕에서 정의를 말해주었다.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당연한 것처럼 하는 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 △ 라이나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 들었다. 그동안 자행되었던 여성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정을 정부가 열지 못한다면 시민 사회가 의무와 도덕적 사명을 가지고 해야한다. 이 국제법정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공청회에서 55년 전 여성들에게 저질러졌던 범죄와 최근의 범죄가 비슷한 것을 보았다. 과거 일본군'위안부'들이 겪었던 경험이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제도화된 장치가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하고 평화와 안보에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

#### △ 아센트

유엔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조사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해 유엔에서 거론될 것이다. 공청회이기에 판사도 검사도 없다. 증언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현재 전세계에서 여성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을 듣고 알아야 한다.

## ●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 피해자 증언

### △ 베트남 (총지만 증언)

22세에 군의관과 결혼했다. 월남 전에는 고엽제를 비롯한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월남에서만 170kg을 사용하였으며, 다이옥신이 주성분으로 많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 1965년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죽었다. 두 번째 출산에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정상아처럼 보였는데, 얼마 지나서 정상아가 아님을 알았다. 31세 아들인데 35kg밖에 안 된다. 1975년에 낳은 아이도 팔이 비틀어진 채 나와서 3개월만 사망했다. 고엽제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

인권이란 정상아를 낳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해 위험한 화학물질을 발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권리침해다. 이번 공청회를 빌어 미국 정부 쪽에 다이옥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 △ 버마 (김허마 증언)

버마는 196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버마 종족이 주류를 이룬 정부와 소수민족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군 독재치하에 있다. 군 독재자가 바뀌면서 기본인권마저 침해받고 있다. 언어와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도 없다. 1988년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획득하고자 데모를 했고 많은 이들이 사살되었다. 이 운동에 가담한 많은 이들이 태국이나 방글라데시에서 10여년 동안 망명생활을 한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들을 고문, 강간, 사법권 외의 처형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러다무라는 여성을 대신해서 증언하려 한다. 러다무는 41세의 카란족 농부이다. 1975년 카렌 연합을 상대로 버마 정부군이 소탕작전을 나섰다. 그들은 식량, 재정, 대화, 원로 학살 등 4가지 고립정책을 썼다. 많은 이들이 죽고, 추방되었다. 러다무 가족도 정글에 숨어서 농사를 지었다. 남편이 짐꾼으로 징집당한 뒤 사살되었고 두 아이도 체포되었다. 먹을 것도 없다. 굶주림으로 2000년 4월 태국으로 피신하여 메콩가 난민수용소에서 살고 있다.

### △ 파테말라 (올란다 아콜라 우리다 증언)

정부와 군대에 의해 자행된 무력분쟁을 견뎌낸 생존자다. 이 분쟁은 40년 동안 생활기반을 파괴하고 가족을 앗아갔다. 매일매일 친구들이 사라지고 가족이 납치 살해되었다. 15세 때 노조를 지지하고 있던 중에 끌려가 묶인 채 20명에게 강간 당했다. 몇 번에 걸쳐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내 위에는 다른 남자들이 있었다. 무력감과 고통으로 삶의 의지가 약해졌다. 산다는 것 자체가 악몽이었다. 현실도피의 생각으로 3개월 동안 시력을 잃기도 했다.

파테말라에는 25,000명의 여성이 강간당하고 실종되었다.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

지 않도록 투쟁하고 있다. 나의 고통스런 과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미래의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 브론디 (알름 증언 - 스크린 뒤)

20세의 고등학생이다. 친구에게 가려고 버스정류장에 있다가 후투족 반군에게 끌려가 수없이 강간당했다. “너희 종족이 우리에게 잘못했으니 그런 것이고 시작일 뿐이다”라고 했다. 겨우 풀려나 정부쪽으로 갔으나 정부군에게 다시 강간당했다. 가족들에게 얘기했지만 처신을 잘못하고 임신까지 하고 중절을 했다며 말을 믿지 않았다.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것 같아 희망이 없다.

△ 동티모르 (프란시스카 수아레스 증언)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싸웠다. 1999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이와 나를 납치하였다. 남편이 반정부군이므로 나를 강간한다고 했다. 강간은 지속되었고 5명이 윤간한 적도 있었다. 동티모르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받아주었다. 신체적으로는 치유되었으나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다.

△ 오키나와

한국에서 일본군인이 했던 것과 푸엘 토리코에서 미국인이 했던 것은 모두 같다. 미군부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

△ 콜롬비아

민중군과 혁명군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살해나 집단 학살을 당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같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사람들이 납치당하고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떠나기로 했다. 난민이 되었다.

△ 오키나와 폭력에 대해 반대발언 (수지오 다카자토)

정치적 독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소말리아 내란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해 여성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복무하는 군인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푸에 토리고나 다른 미군기지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2차 대전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위안소를 오키나와에 다시 설치했다. 군대를 위한 성노예화는 끝나지 않았다.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 오키나와 등 모든 지역에 미군을 위한 위락이라는 강간이 합법화되었다. 태국의 창녀촌은 미군 위락 시설로 처음 시작되었다. 그것은 미국과 당사국간의 체결된 불공정한 협정 때문이다. 미국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진범자인가 하는 것이다.

△ 알제리

회교 근본주의자들에게 납치 당하고 강간당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이슬람 무장 세력단체가 있고 그 수하의 작은 단체들이 여성을 목표로 납치, 강간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나디아는 강간 피해자이다. 아들 알리아스가 테러와 맞서는 조직에 들어가자 테러자들이 집을 포위했다. 가족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20명에게 강간당했고 수치감을 느끼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 멕시코 (치아퍼스 증언)

25세의 리오 플로리다 주민이다. 아들 둘과 딸이 있다. 멕시코 알타마라 국립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기 위해 입원했는데 나와 남편의 동의없이 수술이 이루어졌고 이 수술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수술이었다. 나는 아직 젊고 아이를 낳을 계획이다. 우리 고향은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인권이 유린되었다.

△ 방글라데시(페드로시 프리오바르 증언)

파키스탄 군대가 침략했고 대규모 학살이 시작되었다. 전쟁 내내 윤간을 당했다. 파키스탄 군대의 만행 피해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종전이 되자 적군에 의해 강간당한 여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 과테말라 (제놀티스 증언)

미국인 수녀이다. 미국 정부와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고통받았다. 정치적 상황에 이용당했다.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의 반란군을 도우며 동족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미국이 다른 민족에게도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한다.

△ 아프가니스탄 (마리암 증언)

소련의 침공으로 나라가 가난해지고 이주민도 생겼다. 근본주의자들이 집권한 뒤 여아와 여성들이 희생되었다. 강간을 피하기 위해 자살한 여성들도 많았다. 우리 가족은 분쟁세력과 아무 관계도 없다.

지하드 집권 당시 남편이 체포되었고 그 후 소식이 없다. 1997년 어느 남자가 쳐들어와 남편이 없다는 것을 말고 조롱하며 큰 딸을 데리고 갔다. 며칠 후에 돌아왔는데 찢어진 옷과 명이 있어서 강간당한 것을 알았다. 딸은 "엄마, 나를 죽여줘" 하고 말했다. 우리는 그곳에 더 있을 수 없어서 난민 수용소로 갔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수천 수백만 사람들의 목소리이다.

#### △ 코소보 (변호사 증언)

변호사로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이끌고 있다. 알바니아 여성들을 세르비아인들에게 강간당했다. 이런 강간을 조직적인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코소보는 강간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한다.

강간을 당한 10명의 14~60세의 여성 중 8명이 자살했다. 그 정도로 자살한 여성이 많다.

#### △ 세에라리온 (베시 보로 코코아 증언)

5명의 자녀를 두었고 28년 동안 교사를 했다. 세에라리온은 1991년 국가가 성립되었고 참여 민주주의 경력을 가진 나라이다. 반항군에 대한 전쟁으로 경제기반이 붕괴되었다. 1991년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마을이 파괴되고 여성들이 강간, 납치되며 건강한 남자들도 강제징집과 노역으로 희생당하고 있다. 숲으로 피신하여 4일을 굶으며 숨어있었으나 10명의 반란군에게 강간당했다. 현재 상황에 우울하고 좌절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 △ 팔레스타인 (여성학 교수)

이스라엘이 성립된 뒤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고문당하고, 상처받고, 감금당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에 체포되어 이유도 모른 채 감금당하고 고문당했다. 교수로서도 군부정책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1980년 다시 체포되었고 권리들을 박탈당했다. 운전면허증도 갖지 못하게 하고 연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성적모욕과 고문당했다. 죄목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조직했다는 것이다.

### ● 전문가 논평

#### △ 하비다 호센

우리가 들은 폭력들은 동등한 당사자간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한 쪽은 무장을 하고 한 쪽은 비무장 시민이라는 것이기에 더 심각하다. 군부가 국가를 대표하면서 일어난 일이라 해도 민간인을 보호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다.

국가가 분열되고 분할되어 작은 집단이 출현하면서 기득권의 대항단체로 등장해도 결국 폭력집단이 되어간다. 정부는 이들의 출현을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기도 한다. 여성들의 권리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폭력이 가해져도 시정하지 않는 정부도 있다.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세계화는 무력정치이다.

폭력의 세상에서 여성들은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국경과 제한을 넘어 우정으로 손을 잡고 있다.

△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1995년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 보고를 했다. 현재에도 여성에 대한 전시 범법 행위가 여전하다. 남자들은 전쟁을 시작하고 여성들은 그 결과를 감당한다는 말이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증언자들이 여기를 떠날 때 절망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증언을 국제사회가 들었다. 여러분의 정의를 위해 우리는 노력할 것이기에 소망을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가 왜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국제사회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NGO들이 일하고 있다.

나는 유엔에 보고하겠다. 한국에 가서 처음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용기'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되었다.

□ 2000년법정 판결의 날(2000년 12월 12일, 동경 센타가야 청년회관)

● 국제실행위원회와 국제검사단의 요구: 우스티나 돌고폴, 페트리샤 셀러즈  
(국제검사단)

: 아태지역에서 전쟁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일본 군부의 제도화되고 체계적인 강간과 성폭력 사태로 인하여 20여 만 명의 피해여성들의 삶이 유린되었고, 미래를 파괴시켰으며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소외시켰다. 여기서 증언했던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친다.

“나는 처녀 귀신으로 죽고 싶지 않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들이 당한 고통을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

“일본인들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그들의 자손이 부모들이 저지른 죄를 알아야 한다.”

“일본에 구경하기 위해 오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서 왔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2000년법정은 오직 민간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개최되었다. 정부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기존 전범법정에서 일본 정부가 기소되지 않았었기에 민간의 노력으로 법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 초부터 희생자들이 촉구했었고, 유엔특별조사반이 조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일본군 범죄자 대부분이 죽었지만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고발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 성립된 법정이다.

국제법정의 권한은 국가들의 국제기구가 아닌 아태지역 민중들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지닌다. 국제 인권모임들이 그러하듯이 이런 범죄와 증언에 대해 증거를 남기고 조사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 법정의 목표는 보복이 아닌 정의를 원한다. 이 정의는 희생자와 그 후손을 위한 것이다. 이 법정을 구성한 국제실행위원회와 국제공동검사단은 본 판사단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도에 관한 사법권 설정

제시된 증거와 피해자 증언을 통해 들어난 세계 제2차대전 중에 일본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고문, 강제 이송, 노예화, 살해, 강간 등을 헌장 제 14조에 의거하여 판결해야 한다.

2. 일본정부, 고위 군관리, 전 일본국왕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

본 법정은 성노예화 처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일본 전쟁범죄를 다루었던 국제 재판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국제법에 의거해서 판결해야 한다. 범죄 사실의 은폐, 증거자료의 소각,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던 행위, 피해자의 건강과 존엄성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판결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재판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쓴 실행위원회에 감사한다. 본 법정 검사단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 역사 속에 언제나 성폭력이 일어나고 특히 전쟁 중에는 더욱 그렇다고 하지만 정당화될 수는 없다. 르완다, 유고슬라비아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그 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2차 대전의 일본군 만행은 은폐되어 있었다. 이 만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것과 증인들이 이제 남은 삶이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 판결: 가브리엘 맥도날드, 크리스틴 친킨, 카르멘 아비가이, 윌리 무롱기 (판사단)

이십만 명의 여성들이 세계 제2차대전 중 그리고 그 후에 위안소로 강제 징집되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일본은 군대가 설치되는 곳마다 위안소를 설치하여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며, 병에 걸려도 방치하였고, 영양결핍으로 죽어가도록 했다. 위안부들이 고국으로 귀향한 후에도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거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비밀에 붙인 채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이다.

전쟁 발발시 1만 7명의 상해 주둔 일본군에 의해 점령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위안부를 파견해 강간 수를 줄이고자 상해에 첫 위안소를 설치했다.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자 아태 전역에 위안소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제도화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거의가 한국 여성이었다. 위안소는 일본전쟁 전략 중 하나였다.

요시미 교수의 증언에서 1949년 하타 총사령관의 위안부 요청이 내무성을 통해 각 부, 현에 전달된 기록에서 볼 수 있었던 위안소를 군부 최고장성이 준비했고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을 허가해 준 증거를 보았다.

○ 위안소 설치 요소

1. 현지 여성들에 대한 강간방지 의도로 강간으로 인한 반일 감정 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
2. 한국, 대만, 태국 등 식민지 여성들을 위안부로 징집시킬 수 있다.
3. 일본군함으로써 위안부를 이송하였고 주로 고향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이송되었다.
4. 성노예 제도를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안부들이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불가



- 능하다는 것이다. 또 굶주림과 질병 등으로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5. 일본군의 성병을 막기 위해 철저한 위생검사를 받은 일본군 '위안부'를 데려와 위안소를 설치했다.
  6. 위안소는 여성들만 수용하는 역할을 했다.
  7. 공식적 정책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 정보유출의 위험을 방지했다.
  8. 위안소는 대저택, 군막소, 동굴, 시장 등 모든 장소를 사용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이송하는데 군함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위안소 설치와 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군대와 정부가 정치적으로 관여해 노예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군인들의 일본군 '위안부'와의 성행위는 계급에 따른 시간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군 '위안부'들은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 등급이 매겨졌으며 군부에 결과가 보고되었다. 일본군 '위안부'의 건강진단은 치료가 아닌 관리 차원에서의 검진이었다. 일본군 '위안부'들은 위안소를 당국의 허가없이 외출 시에도 군인이 동행하여 감시하였고 일본군 '위안부'들은 성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리, 빨래, 삽질 등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성병이 생겨도 치료받을 수 없었다. 성병 방지와 피임을 위해 투입된 주사나 약으로 인해 임신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강제 유산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일본의 검사의 기소내용을 인정한다.

본 국제법정은 일본정부가 전쟁 말기에 이에 관련된 많은 문서들을 파괴했다는 증거를 보았다. 일부 남겨진 자료를 통해서 성노예화가 정부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보았다.

일본정부도 1993년 위안부 관련 문제들을 발표하였다. 사실도 시인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그 '유감'은 사죄의 의미가 아니었으며 어떤 배상도 없었다.

본 법정에 제시된 증거와 조사 자료들은 물론 불충분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고 국민기금을 마련하여 희생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기금은 민간기금일 뿐이다.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는 행위가 아니기에 피해자들도 모욕적이며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고 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약식 판결문 참조)

### 3. 2000년법정 행사

####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본법정 개막식

- 일시 : 2000년 12월 7일
- 장소 : 구단회관 대강당

12월 7일 구단회관 대강당에서는, 그동안 2000년법정을 함께 준비해왔던 한국, 북한,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네덜란드,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을 포함하여 언론 기자 등 1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2시간동안 진행된 개막식은 한국 측의 기획과 준비(김선국)로 진행되었다. 한국(김윤옥 공동대표)과 일본, 필리핀 공동의 사회로 2000년법정 공동대표의 개회선언, 수석판사의 현장낭독에 이어 각 국가의 활동보고가 영상으로 소개되었으며, 끝으로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회가 한국에서 참가한 무용가 강혜숙씨의 살풀이 춤과 헌화로 진행되어 장엄하면서도 2000년법정의 시작을 알리는 힘을 뿜어내는 개막식이 되었다.

#### ○ 'SAY YES' Concert 아시아 문화의 밤

- 일시 : 2000년 12월 10일
- 장소 : 구단회관

2000년법정에 참가한 각 국가가 준비한 전통문화 공연과 노래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미국에서 참가한 권희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1000여 명이 모여 약 2시간동안 할머니들과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이번 'SAY YES Concert'는 한국의 김선국이 기획·연출하였다. 또한, 사전마당에서는 'SAY YES'라고 적힌 여백에 2000년법정에 참가한 청년들이 꽃 붙이기를 하면서 촛불의식과 아시아 청년선언을 낭독하기도 하였다.

#### ○ 피해자들과와의 만남

- 일시 : 2000년 12월 11일
- 장소 : 구단회관 3층 진주홀

아시아 9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약 70명과 국제공청회에 참석한 현재 무력갈등 아래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교를 나누었다. 남북 피해자 할머니들이 함께 노래를 하였으며, 뒤이어 각 국의 피해자들이 노래를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흥겨운 잔치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이용녀 할머니의 노래로 시작한 춤과 노래는 분위기를 매우 흥겹게 하였다.

#### ○ 연대시위

5. 약식 판결문(동경) · 한글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문<sup>109)</sup>

검사단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람들

대(對)

천황 히로히토 외, 및 일본정부

인정(認定)에 대한 개요

2000년 12월 12일

판사 : 가브리엘 커크 맥도날드(수석)

판사 : 칼멘 마리아 알히바이

판사 : 크리스틴 친킨

판사 : 윌리 무통가

<sup>109)</sup> 이 판결문은 12월 12일 판사단에 의한 요약판결문 일어판을 번역한 것임을 밝힌다(역자 김윤옥).

## 침묵의 역사를 깨고

1. 1950년대 초두, 아시아 여성들은 50년여에 걸친 고통에 찬 침묵을 깨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쟁중이었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자신과 또한 다른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제도 하에서 입은 폭력에 대하여 사회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완곡히 '위안부'라고 불리었는데 그 용기있는 증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역에 걸쳐서 다시금 몇 백명의 피해여성들에게 침묵을 깨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들은 함께 적어도 약 20만명의 소녀나 여성들에게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행했던 강간, 성노예제, 인신매매, 고문, 기타의 성폭력의 공포에 대하여 세계가 눈을 뜨게 해왔다. 청춘과 미래를 빼앗긴 그녀들은 폭력의 행사, 강제나 기만에 의해서 징집되고, 매매되어 '위안소', 보다 정확하게는 성노예제 시설에 유폐되어 일본군의 주둔지나 전선에서의 생활을 강제 당했던 것이다.

2. 살아남은 여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처녀귀신이 되어서 죽고싶지 않다 - 문필기 (한국)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울기만 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너무도 부끄러워서 깊은 구멍을 파서 그 안에 파묻어 버렸다 - 마키시마 레가라 데라 크루즈 (필리핀)

저는 인생을 잃고, 더럽혀진 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수단도 없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몹시 고생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일본인은 그들의 부모들이 이렇게 잔혹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나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 高寶珠 (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라면 인간보다는 개가 낫다" - 베렌 아론소 사군 (필리핀)

살아남기 위해서 명령에 따랐어요 - 盧滿妹 (대만)

처녀였던 나를 10명의 남자가 강간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하나가 교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동물취급을 받았습니다. 질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끝난 후에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 스하나 (인도네시아)

일본이 용서를 비는 것, 그것을 요구합니다 - 원죽림 (중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는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일본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 에스메랄다 보에 (동티모르)

3. 증언에 나선 피해여성들의 용기는 근래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녀들도 증언을 하게 되었다.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증언에 나선 여성들은 여성의 인권존중이라는 보다 큰 운동이 일어나는데 공헌했고 이러한 범죄가 불처벌로 끝나고 전쟁이나 정복에는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가 부수적인 것이라는 관념을 규탄해 온 것이다.

4. 20세기의 바로 최후시기에 개척된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2000년 일본군 전범 여성국제법정"은 피해자들 자신에 의한, 그리고 그녀들을 위한 10년 가까이 걸친 노력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 '법정'은 국가가 정의를 행할 책임을 다는 것을 게을리 해 온 결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태만의 책임의 첫째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연합국이 1946년4월부터 1948년 11월까지의 극동국제군사법정 '도쿄재판'에서 성노예제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일본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던 것에서 온 것이다. 법정이, 특히 국제적으로 구성된 법정이 이러한 대규모적인 조직적 잔학 행위를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제일 큰 책임은 55년 이상에 걸쳐서 책임자 처벌도 사죄도 하지 않고 보상 등 유효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일본정부에게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만은 피해자들이 1990년이래 되풀이해 왔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유엔특별보고관에 의한 세심한 조사,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정식 권고를 무시하여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5. 이 '법정'은 살아남은 피해자의 소리가 이러한 불이행으로 침묵 당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되며, 이러한 인도에 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애매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확신에서 생긴 것이다. 이 '법정'은 여성에 대한 범죄, 특히 성적 범죄를 왜소화하고, 면책하고, 주변화하고, 불명확하게 하는 지금까지의 역사의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그것이 백인이 아닌 여성에 대해 행해진 범죄인 경우에 보다 현저했다. 또한 이 '법정'은 용감하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그 인생의 종국에 서서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표명해 왔듯이, 여성들에게 범한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남겨진 세월을 그녀들이 평안히 지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강한 확신에서 설치된 것이다. 거기에 있는 것은 이러한 잔학행위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희망과 기대인 것이다. 이 '법정'은 죄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집단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의

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6. 이 '법정'은 지구시민사회의 소리로 만들어진 '민중법정'이다. 이 법정의 권위는 국가나 정부간 조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태지역의, 그리고 바로 일본이 국제법 아래서 설명 책임을 지고있는 세계 사람들에게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 법정에는 적정법 수속의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법정은 적정법 수속은 보증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의도도 없다. 이 법정은 국가가 남긴 국제법위반의 문제에 파고드는 것이며, 국가의 대역을 하려는 의도는 없다. 이 법정의 힘은 많은 인권활동이 그렇듯이, 증거를 검증하고 역사에 남는 기록을 만들어 낼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최대의 수치란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보상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정부가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7. 이 민중법정은 한국, 일본, 필리핀의 대표를 장으로 하는 국제실행위원회에 의하여 생겼다. 이 세 사람은 각기 1991년부터 피해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며 정력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녀들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이며 '생존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올 세대를 위해서'이다. 본 법정은 2000년12월8일부터 12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8. 국제실행위원회와 검사들이 '법정현장'을 기초하고 재판관들이 승인했다. 제2조는 인도에 대한 죄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그 죄로는 성노예제, 강간, 기타의 형태의 성폭력, 노예화, 고문, 강제이송, 박해, 살해 섬멸을 포함하지만 거기에는 한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 현장은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각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든지 유죄로 인정되지 않든지, 혹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기에 증거불충분한지를 분명하게 밝힐 의무를 표명하고 있다.

9. 이 법정에서 행해진 발표나 기소장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델란드, 남북조선(공동제출), 중화인민공화국, 필리핀, 그리고 대만의 법률가인 각국 검사들이 인솔하는 입장을 넘은, 집단적 협력으로 준비된 것이다. 각국 검사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2년 이상 걸친 노력을 거쳐, 이 법정을 결실로 가져왔다. 이들 각국 검사들에게 작년부터 2명의 수석검사가 가세하고 그 참가로 이 준비과정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가 맡겨지게 된 것이다. 수석검사가 종합기소장을 제출하고 여기에는 각국 검사단도 참여했다.

10. 이 법정은 천왕 히로히토를 포함하는 일본정부와 일본군 고관들에 대해서 인도에 관한 죄로서의 강간과 성노예제에 불법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피고인 몇명도 성노예제라는 사태에서 생긴 죄상을 과거에 한번도 물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점에서 이 법정은 극동국제군사법정, 즉 당초의 '도교재판'이 행하지 않았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리고 있다. 따라서 이 법정은 당시 적용 가능했던 법을 적용하고, 피고인을 재판하고, 관련되는 '도교재판'의 법률과 사실의 인정을 확립된 것으로서 채용한다.

1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현장'은 나아가서 국제적 불법행위에서 생기는 국가책임의 불이행에 대한 재판관할권도 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법정은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책임을 특수하게 결부시키고 있다. 제4조에 의하면 국제적 불법행위에는 이들 범죄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거나 규명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 기소나 보상을 게을리 하는 것, 개개인의 고결함, 복리, 존엄을 지킬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것, 차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12. 제14조는 이 법정이 사죄,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할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피고 개인이나 국가에 의한 책임에 대해 권고할 권한을 주고 있다.

13. 일본정부는 2000년 11월 9일자로 이 법정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방청과 참가의 초대를 받았으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법정에서는 법정조언자(아미카스 큐리에)로서의 일본인변호사의 변론을 청취하고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취했던 입장에 대해 기타의 자료도 검토했다.

14. 이 법정에는 64명의 피해자들이 참가하여 자기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죽은 혹은 아직도 침묵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소녀나 여성들을 위해서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피해자가 스스로 증언하고 나아가서 많은 여성들이 비디오나 선서진술서를 통하여 증언을 했다. 우리가 들은 것은 상상을 넘는 가장 잔혹한 행위에 대한 증언이었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도 비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는 역사가, 법률 기타의 전문가, 나아가서는 이러한 잔학 행위에 참가했던 두명의 일본군 병사의 증언도 들었다. 이 법정에서는 회고록이나 한정된 수이기는 하지만 정부측 공식 문서 등 증거문서도 받았다. 이러한 서류는 일본군에 의한 항복후의 서류파괴를 면하고 일본정부나 연합국정부에 의하여 임의로 공개된 것이다. 이 법정은 응변으로 증언을 행한 생존자들의 용기와 존엄을 존중함과 동시에 포괄적이며 유효하며 질서 잡힌 방법으로 증거제출을 행한 검사단의 훌륭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이 법정은 전 일본군병사들의 증언의 의지와 성실함에 감사한다.

15. 재판관들은 심리가 원활히, 그리고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한 국제실행위원회, 서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법정담당자에게 감사한다.

16. 각 재판관은 사람들의 집단적 의지와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이 법정에 참가하고 있다. 이 민중법정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요지는 법적 설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국제법의 확립된 규범을 침해하는 정책이나 행동에 대해서 개인이나 국가의 책임을 묻는 데 있다는 확신에서 있다. 이러한 행위를 간과하는 것은 그 재발을 가져오고, 불처벌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된다. 이 원칙은 특히 성폭력, 젠더폭력이라는 범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해당된다.

17.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는 전과성이 있으며 전쟁시 그 빈도와 잔학성이 증가한다. 법정의 심리가 분명히 했던 것은 소녀나 여성에 대한 성노예의 제도화가 일본군의 군사행동의 필요불가결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10년간 구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 국제전범법정에서 성폭력 범죄가 인정되고 기소되는 눈부신 진보를 가져왔다. 이 법정은 불처벌을 종결시키고, 여성의 신체적 일체성이나 인격의 존엄, 바로 그녀들의 인간성 그 자체를 무시하는 풍조를 역전시키기 위한 진일보인 것이다.

18. 증언을 통하여 일관되게 말해진 것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의 고통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함으로써 더 한층 비참해졌다는 것이었다. 그 비극의 책임이 그녀들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성차별적인 태도의 결과, 치욕으로 고통받고,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 법정이 인정한 사실은 책임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공헌하고, 아직도 세계에서 지배적인 성에 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 이하에 기술하는 것은 재판중 이 법정이 청취하고 수리한 증거에 기초한 사실과 법적 인정의 요지이다. 판결은 200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공포될 것이다.

#### 예비적 사실인정

##### 《위안부제도》

20. 최초의 군‘위안소’<sup>110)</sup>는 1932년 일본 침략 후 상해에 설치되었다. ‘위안소’제도

110) 문서로 확인된 최초의 것. 상해파견군참모부장 岡村寧次의 회상록.



의 구조화는 남경에서의 수많은 학살, 강간, 약탈 등 '남경대강간'으로서 알려지고 있는 잔학 행위의 발생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책으로서 행해졌다. 그 결과, 일본병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일본군에 게 성적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여성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그 밖의 다양한 성노예제 시설, 또한 복잡한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시설을 위해 여성을 징집하고 확보하는 것은 전략의 불가결의 일부이며, 점령지역에서의 시설 밖에서의 강간을 감소하고 그것으로 지역주민의 항일운동을 억제하고 일본의 국제적 악평을 회피하고, 또한 일본군 병사를 성병으로부터 지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 여성과 소녀들은 강제 또는 강요당했고 흔히 사기적인 감언으로 '징집'되어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었다. 당국에 의한 또한 당국의 용인에 의한 징집으로 표적이 된 것은 가장 가난한 계층의 여성들이었다.

21. 여성들의 노예화에는 반복적 강간, 신체손상 기타의 강간이 포함되었다. 여성들은 불충분한 식량, 물, 위생시설이나 환기의 부족 등 비인도적 환경으로 고통받았다. 그 상황은 처참한 것이었다. 쥐나 이, 전염병, 오물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생활했음을 여성들은 증언하고 있다. 구타, 심리적 고문, 고립 등 학대는 일상다반사였다. 강간의 결과로서의 임신, 강제중절, 임신능력의 상실은 많은 '위안부'가 체험한 고통이다. 여성들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상상을 넘은 처우와 일본정부가 자국이 행한 이러한 범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그밖의 방법으로 보상하지 않았던 결과, 용기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을 극히 최근까지 수치와 고립과 빈곤과 잔혹한 고통의 생활에 몰아넣어 온 것이다.

#### 법적 인정

##### 〈인도에 대한 죄〉

22. 검사단은 천황히로 히토 그 밖의 일본군 정부고관을 제2차대전 중 일본군이 정복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여성들의 강간과 성노예를 시인하고, 묵인하고, 방하지 않았던 책임에 대하여 인도에 관한 죄로 기소하고 있다. 검사단에 의한 방대한 증거문서 및 증인의 증언의 수리에서 예비적 사실인정 발표까지의 시간이 짧은 관계로, 판사는 중핵의 피고인, 천황 히로히토의 강간과 '위안부'라 불리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제도에 대한 책임의 평가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그밖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2001년3월8일에 발표예정의 최종판결까지 인정의 발표를 연기한다. 우리가 이것을 정의의 정신에 근거하여 행함을 피하여성, 검사, 또한 아태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23. 그러므로 우리는 1945년 당시의 법과 검사단이 제출한 증거물이나 주장한 것,

나아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폭력이 1945년 당시의 법으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자세히 검토했다. 우리들의 인정으로는 인도에 관한 죄 - 침해행위 중에서 가장 심한 것 중의 하나 -는 전후의 각 법정에서 기소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현재 적절하게 기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인정으로는 강간과 성노예제는 광범위, 조직적, 또는 대규모로 행해졌을 때는 인도에 관한 죄를 구성한다. 1945년까지 강간과 노예화의 양편이 국제법 아래 극악한 범죄로 오랫동안 인정받고 있었다. 성노예제는 새로 범죄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화의 특별히 잔학한 침략적이며 파괴적인 형태이다. 노예화란 '인간에 대하여 소유권에 수반하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는' 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노예화에는 강제적 또는 사기에 의한 이송, 강제노동 그밖에 인간을 소유물로서 취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위안부'들을 '군수' '물자'의 일부로 징발한 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여성차별 인종차별적 태도에 근거한 성노예제가 주로 아태지역의 가난한 비 일본인 여성을 향하여 전례가 없는 규모로 제도화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24.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여 판사는 천황 히로히토를 인도에 관한 죄에 대해 형사책임이 있다고 인정한다. 원래 천황 히로히토는 육해군의 대원수이며,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자가 국제법에 따라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할 책임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천황 히로히토는 단순한 괴뢰가 아니며, 오히려 전쟁의 확대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나아가서 판사의 인정으로는 천황 히로히토는 자신의 군대가 '남경대강간'중에 강간 등의 성폭력을 포함하는 잔학 행위를 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행위가 국제적 악평을 초래하고, 또한 정복된 사람들을 진압하려는 그의 목적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제재, 수사나 처벌 등 모든 수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소'제도의 계속적 확대를 통하여 강간과 성노예제를 영속시키고 은폐하는 방대한 노력을 고의적으로 승인하고 또한 적어도 부주의로 허가한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가 인정하는 바로는 천황은 이런 정도의 규모의 제도는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또는 알아야 했었던 것이다.

#### 국가책임

25. 일반적 국제법 아래서는 국가는 국가의 행위에 기인하며, 타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제법적 책임이 있다. 국가가 국제적 불법행위를 범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적용 가능한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국가는 조약에 근거한 책무와 국제관습법에 근거한 책무, 양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왔다. 어떤 행위가 국가의 국제적 책무에 위반되는 행위인 경우, 국내법으로는

합법으로 인정되어도 그것으로 국제법 아래서도 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6. 국가의 기관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위는 국제법으로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그 기관이 선거인,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어느 권력에 소속하는 것인지, 그 기관의 기능이 국제적인 성질의 것인지, 국가기구 중에서 그것이 상부기관인지 하부기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군대는 국가의 기관이다. 국가는 자국 영역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나 부작위만이 아니라 자기의 기관, 대리인, 관료, 피고용인 등이 자국 영토 외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27. 일본이 위반한 조약상의 책무에는 1907년의 '육상전의 법규관례에 대한' 헤이그조약, 1921년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대한 국제조약', 1930년의 ILO '강제노동금지조약' 등이 있다. 일본은 또한 국제관습법의 규범도 위반하고 있으며, 1907년의 헤이그조약이나 1926년의 노예조약에서 표현된 국제관례법의 규범에 대한 위반이 포함된다<sup>111)</sup>. 나아가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은 극동국제군사법정(도교재판)의 판결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28. 일본국가가 제2차대전 종결 시 '위안부'를 각 국가로 귀환시키는 일을 게을리했던 것은 헤이그조약<sup>112)</sup>의 직접적 위반에 해당한다.

29. 제2차대전후 일본은 많은 조약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일본 네델란드협정, 일본필리핀 배상협정,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협정' 등이 있다. 이 법정은 이들 평화조약은 '위안부'문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조약으로서도 개개 국가가 인도에 관한 죄에 대한 다른 국가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0. 본 법정은 모든 평화조약에는 본질적인 젠더 편향이 존재한다는 수석검사의 주장은 납득되는 것임을 인정한다. 본 법정은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모든 평화조약 체결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발언권도 지위도 가지지 않았던 점에 유의한다. 바로 그 때문에 평화조약 체결시, 군의 성노예제와 강간의 문제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방치되었고 조약의 교섭이나 최종적 합의에 아무런 역할도 없었던 것이다. 본 법정은 국제적인 평화교섭과정에서 이렇게 젠더 인식을 결여한 채 행해지는 것은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지금도 지속되는 불처벌의 문화를 조

111) 이 조약에 일본은 가맹하지 않았으나 이 조약은 당시의 국제관례법으로 확립된 규범을 명문화한 것이다. 국제관례법의 규범은 조약의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112) 전술한 헤이그육상전조약(1907) 부대규칙. 이 두개를 합하여 '헤이그육상전법규'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장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 보 상

“병사들을 상기하면 지금도 떨린다.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해야 한다. 몇번이고 몇번이고 사죄해야 한다”(조선반도의 피해자).

31.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본정부가 자기의 기본적인 법적 책임을 실행하는 일을 게을리했던 것이 여성들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는지, 비밀을 지키는 것과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감각을 얼마나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해 왔는지를 명백히 했다. 일본정부가 50년 이상 걸쳐서 보상은 ‘적절하게, 효과적, 신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침해해 온데 대해 우리는 주목한다.

32. 일본정부가 배상을 행할 책임을 검증하는데 있어, 우리는 옛날부터 국제법의 원칙이 되어왔던 “국가는 자기가 범한 국제법적 위법행위에 대해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가의 책임이란 손해배상, 원상회복, 사회복귀, 만족과 재발방지의 보증을 제공하는데 있다. 배상에는 상기의 사항 중에서 개별적 상황에 따라 그 어느 것인지, 혹은 모든 형태의 것을 포함하며 피해자가 받은 모든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33. 지금까지 역대 일본정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검사단과 피해증인들은 의미있는 사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불법행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받아드린 후의 사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 당초의 죄상을 명백히 할 문서의 피기부터 침묵으로, 군의 관여를 부인하는 명백한 허위의 주장, 국제적 책무에 따르지 않는 부분적 ‘사죄’에로 변천해 왔다고 인정한다. 일본국가가 불법행위를 충분히 인정하는데 의도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 수치와 침묵을 지속시키고, 생존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그녀들이 마음 편히 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빼앗아 왔다.

34. 불법행위를 불법행위로서 인정하는 책무가 있음과 동시에 적절한 공적 역사기록을 작성하고 미래의 세대에 이러한 잔학행위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법정의 인정에서는 일본정부는 현재의 일본인이나 미래세대를 교육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35. 피해자들과 상담하면서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며 여성들의 존엄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사회가 볼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일본정부에게 있다. 나아가서 필요한 것

은 당시 폭력과 노예화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침해행위의 결과로 생긴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산정가능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손해배상을 행해야 한다. 국제법 하에서는 손해배상은 정부가 행해야 하며, 물질적인 피해, 상실된 기회,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친지들이 입은 고통등을 적절히 참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정의 인정으로는 아시아여성기금은 증언한 여성들 거의 모두에 의하여 격렬히 거부당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준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36. 법정의 인정에서는 배상이 지연된 것이 여성들에게 수치와 분노와 비애와 고립과 경제적 곤궁과 빈곤, 건강문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일등의 괴로움을 지속적으로 강요해 왔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도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37. 재활을 위한 의료와 심리적 돌봄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인 사회적 봉사도 필요하다.

### 결 론

38. 심리를 통하여 본 법정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문서를 검토하고 또한 이들 범죄가 범해진 시점에서 적용가능한 법의 검토를 한 후에 법정은 사실인정의 개요를 발표했다. 최종판결은 2001년 3월 8일에 발표된다.

39. 법정은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검사단이 피고인 천황 히로히토에 대해 입증한 것을 인정하며, 천황 히로히토는 공통기소장 중 인도에 대한 죄의 소인(訴因)1과 2인 강간과 성노예제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로 인정한다. 또한 인도에 대한 죄의 소인3의 강간에 대해서도 유죄이다. 나아가서 판사는 일본정부가 ‘법정현장’ 제4조가 말하는 의미로 ‘위안소’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가책임을 진다고 판정한다.

40. 기타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사는 현 단계에서 형사책임에 대해 인정하기 위해 본 법정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를 소화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 피고인의 개인으로서의 또한 상관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최종판결 시에 판결하는 것으로 한다.

### 권 고

#### 〈일본정부에 대하여〉

1. 완전하고 성실한 사죄를 행할 것. ‘위안부’에게 용서를 빌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것.

2. 법적 조치를 취하고 생존자에게 보상할 것. 그 금액은 가해행위 별로 적절할 것.
3. 적절한 정보를 낼 것.
4. 인적 자원과 기구를 운영하며 조사를 할 것.
5. 생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도서관 박물관, 추도비를 세울 것.
6. 공식 비공식적 교육제도를 확립할 것. 교과서에 기술할 것. 장학금을 보장하고 젊은이에게 불법행위의 사실을 전할 것.
7. 성의 평등성을 확립할 것.

〈전 연합국에 대하여〉

8. 도쿄극동재판에서 쇼와 천황이 기소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모든 문서를 공개할 것.

〈유엔에게〉

9.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일본정부가 보상하도록 권고할 것.

## 1. 최종판결 및 국제회의 보고

심영희(한양대 교수, 사회학)

지난 12월 3일~4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 국제법정(이하 2000년법정)'의 최종판결이 있었다. 2000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2000년 법정>에서 기소한 내용에 대해 1년 간의 심리를 한 끝에 내려지는 최종판결을 듣는 법정이었다. 특히 전 유고전범 국제법정(ICTY)과 평화궁전이 있고 이준 열사 기념관이 있으며,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자리잡게 될 평화의 도시 헤이그에서 이런 중요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일본의 위안소 운영과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성노예제로 공인되고 국제적인 범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최종판결

#### (1) 법정스케치

2001년 12월 3일 오전 10시, 루센트 극장에 법정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최종판결을 위한 법정은 12월 4일 화요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고 12월 3일 월요일 하루는 기억을 새롭게 하고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2000년 12월 도쿄에서 있었던 '2000년 법정'에서의 기소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였다. 법정의 무대 위에 수석검사단과 각 국 검사단들이 자리를 잡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무대위로 올라오셨고, 어린 소녀들이 봉우리 맺은 백합꽃을 드렸다. 할머니들은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모두에게 인사를 하시고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할머니들이 원고석에 앉은 것이었다.

먼저 국제조직위원회(IOC) 공동대표들의 인사말이 있었다. 윤정옥 대표는 탈레반과 미국으로 인해 정의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꿈이 도전받고 있으며, 2000년법정은 온 세계의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여성은 강하므로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평화가 따스한 봄벌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쭈이 야요리는 여성들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고,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법정이 일본여성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 말하였다. 첫째, 이것이 진정한 민중의 법정으로서 민중을 위해 국제법을 적용한다는 것, 둘째, 이것이 여성의 법정으로서 젠더 관점에 의한 글로벌한 여성법정이라는 것, 셋째, 이것은 일본 우익에 대한 도전이며 일본정부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여성의 정의를 위한 투쟁은 가해국 여성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인다이 사호르(Indai Sajor)는

199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첫 번째 '침묵깨기'가 있는 이후 이 곳 헤이그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다면 2000년 12월의 2000년 법정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2000년 법정에서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새겼다. 특히 남북의 공동기소와 중국과 타이완의 만남이 의미있었다고 회고하면서 타이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입은 여성이 새롭게 발견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판사장인 가브리엘 맥도널드(Gabrielle Kirk McDonalds)가 입장하였다. 가브리엘 판사는 "이 법정은 국제사회의 기본원칙과 시민사회의 권위 위에 서있으며 모든 것이 실제 재판과 똑같다. 하지만 법적 집행만이 빠져 있다. 비록 판결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 힘과 권위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전쟁에서 성폭력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폭력적 행위를 무시하는 문화가 있음을 개탄했다. 이번에 증언한 35명의 전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해 그들은 정의를 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판사들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하고, 공정하고, 세부적인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수석검사인 패트리샤 셀러즈(Patricia Viseur-Sellers)와 우스티나 돌고폴(Ustina Dolgopol)이 나와서 각각 공공기소장과 일본정부의 책임에 대해 논하였다. 패트리샤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본이 팽창주의 정책으로 타이완과 한국을 식민지화했고 남경을 침공했으며 일본군'위안부'체계를 제도화했고, 이로 인해 1937~1945년 사이에 많은 여성들이 일본정부에 의해 제도화된 군성노예제로 끌려가 봉사를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러한 여성들의 운송에 관한 문서가 있고 도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돌고폴은 일본정부의 책임에 대해 논하였다. 그녀는 일본이 인간존엄과 영혼의 파괴, 인종차별적 메시지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간은 친밀성과 성과 몸에 관련된 폭력범죄로 수치와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말하기 어려운 범죄이며, 이를 저지른 것은 1907년 헤이그 조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배상, 재할, 기념관 박물관 건립 등을 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는 일본으로 하여금 이를 의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번 법정이 그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아미커스 큐리에(법정의 친구)가 나와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신했다. 원래 재판에는 피고와 피고의 변호인이 나와야 하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가 나오지 않아서 이들이 대신한 것이다. 아미커스 큐리에(법정의 친구)는 적법절차를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든 형사재판은 피고가 죽으면 끝나는데 죽은 자에 대한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계속하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 히로히토 일본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책임에서 면제되므로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적법절차 아래서 공정한 재판의 권리와 변호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상문제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조약 및 다른 조약들에서 해결되었으며 이미 사적인 기금으로 보상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각 나라 검사단의 기소가 있었다. 맨 먼저 남북한 공동기소가 있었는데, 북한의 황호남 검사(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서기장)가 국가 책임에 대해 논하고 남한의 조시현 검사가 개인책임에 대해서 논했다. 이어서 중국, 필리핀, 타이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의 기소가 있었고 파푸아뉴기니의 기소가 새로 추가되었다. 대부분의 기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비디오를 많이 이용하였다.

이번 기소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증인으로 나온 네덜란드 출신 전 위안부 안 압바현과 일본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들고나온 가와구치변호사였다. 안은 자신이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치료될 수 있었는지를 조리있게 설명하여 감동을 주었고, 가와구치는 책임인정, 사과, 처벌,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가해국 시민으로써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열린 법정이 가해국 시민들의 양심선언으로 그들의 장이 되어버린 듯 했다.

다음으로 전문가 증언이 있었는데, 칼쇼벤(Frits Kalshoven)이 국가책임에 대해 증언하였고, 베오그라드에서 온 레빠 미자노비치(Lepa Mladjenovic)는 비디오를 통해 전쟁 중 강간여성의 트라우마에 대해 수치, 죄의식, 공포의 3단계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 외에도 천황제도에 대해 위안소체계에 대한 전문가 증언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아미커스 큐리에가 나와서 이번 법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것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설명했다. 일본의 히가시자와(Yasuchi Higashizawa)는 일본 법정에서의 민사소송 10개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2000년 법정 이후에도 계속 기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법정이야말로 양심과 정의의 소리를 대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조시현 교수가 나와서 유엔, ILO, 최근 미국법정사례 등 최근의 발전에 대해 소개했다.

끝으로 특별히 마련된 순서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한 마디씩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별히 남한 대표로 법정에 서신 김은례 할머니는 평양에서 17살에 끌려가서 상하이, 남경을 거쳐 위안소에 가게 되었고 몸은 절단났으며, 일본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일본에게 사과와 배상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광금녀 할머니는 현재 77세로, 16세

때 광주의 공장에서 일할 때 20명을 뽑아서 중국 모란강으로 보냈는데 그때 뽑혀가서 일본에게 넘겨졌다며 정신이 파괴되었고 병신이 되었으며, 칼자국이 두 군데나 있다고 했다. 일본정부에서 50년이 지나도 사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죽기 전에 반드시 보상받아야겠다고 말했다.

## (2) 최종판결의 내용과 의미

최종판결은 12월 6일 루센트극장에서 있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라는 서기의 말과 함께 가브리엘 맥도날드 등 판사 네 사람이 입장하였다. 판사들은 250여 페이지의 판결문 전문 외에 따로 마련한 요약문을 번갈아 가며 읽기 시작했다. 판사단은 요약판결문을 다 읽은 후에, 이번 법정에서 증언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출석한 피해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여 판사 네 사람이 서명한 판결문을 가슴에 안겨주었다. 50여 년 동안 고생한 피해자 생존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국제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순간이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내 눈에도 눈물이 고이면서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IOC의 윤정옥, 마쯔이 야요리가 나와서 아프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박수로 채택함으로써 모든 일정이 끝났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단이 주로 적용한 법은 ‘인도에 반한 죄’로써의 강간과 성노예에 관한 국제법이었다. 개인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이번 판결은 2차대전 시 많은 아시아여성들이 일본군에 성노예로 끌려갔고 강간을 당했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해 히로히토 일본천황을 포함하여 기소된 10인 전부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이번 법정은 당시 일본의 군대와 정부관료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 이후 사실의 은폐, 부인, 왜곡, 책임자 기소 처벌 회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배상회피, 재발방지 회피 등,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법정은 이러한 책임의 인정에 기반하여 일본정부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안소”의 설치에 대한 책임 인정, 충분하고 솔직한 사과, 피해자에게 정부를 통해 보상, 일본군성노예제 체계에 대한 진상조사기제 설립 및 관련자료의 역사적 보존, 진실 및 화해위원회 설립, 기념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설립 및 피해자에 경의 표시, 역사교과서에 기록, 성인지 훈련 지원, 본국송환 희망 생존자들의 본국송환, “위안소”와 관련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의 공개, “위안소”의 설립 및 충원에 관련된 주요 가해자들을 처벌, 사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 등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이번 법정을 2차대전 후 일본을 재판한 극동군사재판소(IMTFE)의 연장으로 보고 접근했으며 전 연합국들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특이하였다. 즉 이 법정은 전 연합국들이 “위안소”체계의 설립 및 작동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및 정부 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왜 그것이 극동군사재판소에서 기소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극동군사재판소에서 히로히토 일본천황을 기소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모든 군사적 및 정부기록을 즉각 공개할 것, 그리고 전후 재판과 지난 55년 간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민간법정의 판결로써 성노예제 강간 등, 전쟁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되지 않은 일본을 양심과 도덕의 힘으로 전 세계에 전범으로 공식으로 선포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처벌하고 배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의 잘못을 만천하에 밝히는 것이야말로 2000년법정과 같은 여성국제시민법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민간법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정대협 등 아시아 여성연대의 노력과 피해자 생존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라고 보며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 2 '정의와 책임'국제회의(Conference on Justice and Accountability) : 집단 트라우마와 배상

나는 12월 5일과 6일 헤이그의 사회과학연구소(Institute of Social Studies)에서 개최된 '정의와 책임'국제회의에도 열심히 참석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젠더정의를 위한 여성 코카스(the Women's Caucus for Gender Justice), 네덜란드의 노비브(NOVIB oxfam Netherland), 그리고 사회과학연구소(ISS)가 공동주최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조직은 여성 코카스(Women's Caucus)가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성 코카스는 새로 설립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비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제 NGO로서, 2000년법정 당시에 사무국을 맡았고 국제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쟁 시 여성안권의 문제를 부각시킨 바 있다.

이번 회의의 제목인 '정의와 책임'이라는 주제에서도 드러나듯이 회의의 목적은, 2000년법정의 대상이 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여성에 대한 국제적 범죄에 책임을 묻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을 촉진하고 여기에 여성의 목소리를 신기 위한 힘을 주려는 것으로 보였다.

회의는 12월 5일~6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12월 5일 오전에는 전체회의로서 '평화와 정의에 대한 문제'발표가 있었고, 워크샵으로써 '평화운동가의 눈으로 본 공격과 테러리즘'과 '집단 트라우마와 배상'이 있었다. 오후에는 '국제정의를 여성에게 적절하도록 만들기'라는 전체회의와 '극단주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 '젠더, 평

화과정과 인도주의적 원조', 그리고 '젠더 관점으로 증거문서 기록하기' 등 세 개의 워크샵이 있었다.

12월 6일 오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 임박한 현실'이라는 전체회의가 있었고 '과도기적 정의'와 '국가재판소에서의 국제범죄'라는 워크샵이 있었다. 오후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작동시키기 : 전략짜기 회의'라는 전체회의가 있었고, 잇따라 네 개의 워크샵이 열렸는데 그 중 3개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전략짜기 워크샵이었고, 하나는 '2000년법정 판결을 집행하기'였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작동시키기 : 전략짜기 워크샵'의 3개의 제목을 보면 '여성의 증거기록팀', '국제법의 힘을 각 지역에서 강화하기', '미디어 캠페인 전략짜기 회의' 등으로 매우 구체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12월 5일의 워크샵 중에서는 '집단 트라우마와 배상' 워크샵이 인상적이었다. 발제자는 한국의 윤정옥, 전 유고의 레빠 미자노비치, 그리고 이스라엘의 야엘 다니엘리였다. 윤정옥 대표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중 중국에 계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성병에 걸려서 일어날 수도 없어 어두운 방에 누워있었는데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고 있는 형편이라 했다. 사람에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귀소본능이 있을텐데 그녀에게는 그것도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2001년 8월 윤정옥 대표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에도 어두운 방에 누워있었고 11월에도 마찬가지로 누워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윤정옥 대표를 만난 이후 그녀는 담배를 끊었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본다고 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야채도 가꾸고 사람을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사례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오그라드에서 온 레빠 밀라제노비치는 세르비아여성으로써 보스니아의 강간피해여성을 돕는 <성폭력에 대항하는 자울여성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트라우마의 치료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집단적 치료의 모멘트와 관련하여 책임과 사과 등 공개적인 인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보스니아에서 열렸던 거대한 집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꺼안고 울었던 집단적인 모멘트를 언급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가해국에 대항하는 집합 기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일본군'위안부'의 경우에서처럼 왜곡되어 있는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새로운 집합기억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기나긴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2차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다음으로 임상심리학자이자 피해자학자인 이스라엘의 야엘 다니엘리가 발표를 하

였다. 그녀는 유대인으로써 나찌 홀로코스트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학자로서 유엔 범죄, 인권 분야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테오 반 보벤과 함께 일해온 여성이다. 저서로는 <트라우마적 스트레스에 대한 국제적 반응>, <트라우마의 다세대적 유산에 대한 국제 핸드북>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두 '침묵의 음모'라는 이론을 주장했다. 이것은 피해나 트라우마 후에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세대에 걸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이 '침묵의 음모'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일본의 36년 간의 강점 식민지시대를 경험했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식민주의가 우리에게 준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단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등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얻은 몇 가지 요소들을 제시했는데 이는 개인, 사회, 국가, 국제적 관점에서의 목표와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이었다. 첫째, 개인의 관점에서의 목표는 사회나 국가 내에서 피해자의 가치의 평등, 권력, 존중, 배상의 기반을 재확립하는 것으로서, 이를 성취하는 방법으로는 1) 보상(실질적 및 상징적 보상), 2) 원상회복, 3) 재할, 4) 기념 등이다. 둘째, 사회적 관점에서의 목표는 피해자를 사회의 낙인과 고립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것으로서 이는 1) 기념, 2) 영웅적 행위에 대한 기념비, 3) 권력화, 4) 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국가적 관점에서의 목표는 법과 정의의 규정 아래 평등한 가치를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1) 기소, 2) 사과, 3) 공개기록물 확보, 4) 교육, 5) 감시·갈등해소, 예방개입 등의 국가기제를 만드는 것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국제적 관점에서의 목표는 국제적 커뮤니티가 법과 정의의 규정 아래 불처벌과 싸우고 평등한 가치를 제공 유지하며 시정하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1) 특수 및 상시 기소 기제를 만드는 것(예컨대, 특수법정과 궁극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것), 2) 공개적 기록물을 확보하는 것, 3) 교육, 4) 감시·갈등해소 및 예방개입을 위한 국제적 기제를 만드는 것 등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서로 다른 쪽에 있는 여성들, 예컨대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등 가해국과 피해국의 여성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논의 되었다. 이에 대해 르완다에서 온 한 여성은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일을 함께 하도록 하고 그들을 함께 내버려두면 저절로 그것에 대해 말하게 된다. 레빠와 상담한 한 코소보 여성은 처음 레빠를 만났을 때는 그녀가 세르비아인인 것 밖에 몰라 떨렸는데 만나고 나서 의견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다니엘리는 "민주주의는 깨어진 영혼으로는 재건설될 수 없다"는 말로 답을 제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나찌 홀로코스트 연구가 독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이 토론에서는 특별법정이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르완다에서 온 여성은 그곳에서는 식료품에 대한 필요성이 지배적이어서 트라우마 치료는 중요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과테말라에서 온 여성은 트라우마 배상은 정의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정이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개인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중시하고 이를 위한 '트러스트 펀드(Trust Fund)'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피해자를 위한 트러스트 펀드가 식료품, 피난처, 상담 등 중 어디에 우선이 두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도 나왔다. 대답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오후 전체회의는 '국제정의를 여성에게 적절하게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켈리 아스킨, 마쓰이 야요리 등이 발표하였다. 노트르담 법대의 시민 및 인권센터에 있으며,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1997)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켈리 아스킨은 2000년법정의 수석검사인 페트리샤 대신에 발표했다. 그녀는 전 유고전범 국제법정(ICTY)에서, 강간이 전쟁범죄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4개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1)강간이 남녀 모두에게 성적인 성격의 신체적 침범이라고 규정되었고, 2)한 사람이 심문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강간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고문으로써의 강간으로 인정이 되었고, 3)두 남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남성 성폭력의 경우 이 역시 전쟁범죄로 인정되었으며, 4)여성과 소녀들을 잡아두고 군대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한 경우 강간과 성노예로 인정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마쓰이 야요리가 발제를 하였는데, 그녀는 바우넷 재팬(VAWW-NET Japan)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녀는 이 조직에 대해 한편으로 성노예제, 다른 편으로 현대의 갈등을 다루는데 특히 성노예제가 처벌받지 않은 것과 관련한 활동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1991년에 한국인 일본군'위안부'(김학순)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나왔으며, 1997년에 강덕경 할머니가 그린 그림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들고 나와서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2000년법정과 국제공청회를 설명하였다. 이것을 듣고 앉아 있 으러니, 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이 나와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마쓰이가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 자신의 국제적 명성을 쌓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가 막혔다.

그러나 마쯔이는 과연 코스모폴리탄적인 여성운동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발제 끝에 오전의 워크샵에서 있었던 토론과 관련된 문제를 꺼내어 다시 질문을 던져 좌중을 흔들어놓았다. "미국의 아프간 침공은 공격의 범죄가 아닌가?"라는 질문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망설였는데 조금 있으니깐 한 수단 여성이 일어나서 "이는 분명 공격의 범죄다"라고 말했고, 이어 소말리아에서 온 여성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동서 양쪽 모두 때문에 붕괴하려고 한다. 동에서는 무기를, 서에서는 먹을 것을 주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며, 다음 폭격 장소는 소말리아가 될 것이다"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자 미국인인 도나 설리반이 나와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분명히 전쟁범죄이고, 특히 민간인을 향해 무력을 사용했다는 것은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애초에 그러한 군사적 행동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정당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당성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결국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서 있느냐 하는 입장이 중요하며 이에 기반한 보이지 않는 담론권력 싸움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국제형사재판소의 준비과정

둘째 날의 주제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전략짜기가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임이 분명했다. 오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 임박한 현실'이라는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사회를 맡은 우스티나 돌고폴은 ICC는 "국제적 역사를 창조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며 주의깊은 관찰을 통해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또 ICC는 사람들을 정의로 이끌 것이고 그 법령에는 피해자를 위한 '트러스트 펀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면 피해자들이 배상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세리코는 ICC가 1998년 7월에 로마에서 설립하기로 투표했던 과정을 설명했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캐나다의 바바라 드봉 변호사는 '젠더와 ICC'라는 주제로 왜 우리 여성들이 ICC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했다. 먼저 그녀는 ICC가 어떤 모습이 될 지에 대해 설명했다. 법에는 민권법 전통과 보통법 전통의 두 전통이 있는데 민권법 전통은 보통법의 당사자주의와 대조적으로 피해자 지향적인 접근을 해왔다. 성폭력 범죄는 낙인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 피해자는 스테레오타입과 연관됨으로써 법체계를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ICC에서는 3가지 전략을 쓰는데 첫째는 여성에 대한 범죄들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법령에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것이다. 이에는 강간, 성노예제 외에도 인신매매, 젠더에 기반한 박해 등도 포함된다. 둘째, 이와 같은 범죄들을 제대로 기

소하기 위해 '피해자와 증인 부서'라는 특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은 절차와 증거의 규칙에 나열되어 있다. 이것은 신뢰성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셋째, 이 재판소의 구성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공정한 대표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재판소의 작동과 관련하여 인권보장의 규정이 있고 '젠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젠더는 "사회의 맥락속에 있는 남자와 여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운동가에게 왜 중요한가는 ICC의 부수효과와 관련해서이다. ICC는 무엇이 좋은 체계인가의 비전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법령이 잘못 만들어지면 국가에 모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여성운동가들도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ICC 연대(세계 각 국의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조직 네트워크)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인 스토틀즈는 어떻게 조약이 발동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ICC가 국제 정의를 위한 최선의 기제이고 NGO를 이를 위한 강화기체라고 보았다. 조약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서명은 데드라인인 2000년 12월까지 139개국에 서명을 했으나 비준은 보다 복잡한 문제로써 60개국에 인준해야 하나 현재 49개국에 인준했으며, 앞으로 10개국에 비준하리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목표는 조약 채택 4주년 기념해인 2002년 7월까지 60개국 비준을 받는 것이라 했다. 우리나라는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 외 조약의 구현을 위해 국가의 법들이 젠더 범죄의 경우에 강력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리하여 보편적 법률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소는 증거우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증거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캠페인과 미래의 일을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 재판소가 실제로 설립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실제적 배치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토론시간에는 '젠더'의 규정에 대해 젠더범죄와 여성에 대한 범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젠더'의 규정이 너무 넓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또 재판소의 성격과 관련하여 비준이 어려운 것은 비용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전유고전범 국제법정(ICTY)의 경우 1년에 120만 달러를 쓰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60개국만 비준하면 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후에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작동시키기 : 전략짜기 회의'라는 전체회의가 있었고 엿따라 네 개의 워크샵이 열렸는데, 그 중 3개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전략짜기 워크샵이었다. 전략짜기 워크샵 3개의 제목을 보면 '여성의 증거기록



우 구체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도쿄법정 판결을 집행하기' 워크샵에서는 크게 두 세 가지 논의의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 유엔 인권위, ILO, EU, G8 등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특히 판사 네 분이 도쿄로 가서 일본정부에 판결문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하나는 판결문 복사본을 모든 분야의 학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작은 글들을 쓰게 하여 교육을 통한 영향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왜 판결을 했나? 누가 법을 구현하는가?와 관련한 것으로 전 유고전범 국제법정이나 르완다전범 국제법정의 공식문서를 통해서 처럼 변호사나 판사들이 국내법이나 사회에 영향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또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서로 연결되게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

### (3) 이준 열사 기념관과 전 유고전범 국제법정(ICTY) 방문

최종판결 후 오후에는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남북한 및 일본 대표들 그리고 유럽에서 온 한국 참관인 등 모두 20~30명이 함께 갔다. 좁은 기념관이 사람들로 미어 터지는 듯 했다. 관장의 말에 의하면 북한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남북한 인사가 함께 방문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했다.

사비를 털어 이곳에 기념관을 마련하고 이준 열사 관련 자료를 수집 전시하며 전시관을 운영해온 관장부부는 내년 7월 17일이면 기념관을 연지 50주년을 맞는다며, 이준 열사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열변을 토했다. 관장부부의 말에 의하면 이준 열사는 할복 자살했다기 보다 화병으로 여관에서 객사했거나 일본 밀정에 의해 타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기념관 장소는 바로 이준 열사가 머물렀던 여관이라고 했다.

만약 이준 열사가 당시 이곳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한국합병 야욕을 막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오늘의 위안부 문제도 법정도 없었을텐데 하는 역사의 가정을 해보니, 이준 열사의 죽음이 더욱 원통하고 안타까웠다. 또한 역사의 분기점에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이준 열사 기념관에 가 있는 동안 법정에 참관한 일부 일본인, 독일인 등 7명은 판결문 요약문을 들고 헤이그에 있는 일본대사관을 찾아가 전달하려 했다고 한다. 사실 IOC 대표와 한국 및 일본 대표단이 일본 대사관에 찾아가서 판결문을 전

달하자는 의견이 법정 이전에 나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 민감한 필리핀 쪽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이들이 갔을 때 경비같은 사람이 나왔으나 그는 상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이어 12월 5일과 6일 헤이그의 사회과학연구소(Institute of Social Studies)에서 개최된 '정의와 책임' 국제회의가 있었다. 나는 첫날 오전에 <전 유고전범 국제법정> (ICTY)에 잠시 들리느라고 첫 번째 전체회의는 듣지 못했지만, 유고법정을 방청한 것은 나에게서 큰 행운이었다. ICTY에는 한국의 권오근 판사가 올 11월 22일부터 새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도 있었다.

12월 5일 내가 방청한 ICTY에서는 포차마을 습격과 이에 따른 강간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책임을 피하려는 피고인 변호인단의 교묘한 말들을 듣고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예컨대, 피고인 변호인은 강간이 전쟁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나, 하나의 강간 행위는 전쟁범죄라고 볼 수 없고 많은 강간, 그리고 사전에 인종청소로 계획한 것만이 전쟁범죄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피해나가려고 했다.

#### (4) 앞으로의 과제

이제 최종판결과 함께 2000년법정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2000년법정이 끝났다고 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또는 새로이 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을 든다면 우선, 2000년 법정의 판결이 현실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중요하다. 판결문에서도 이를 위해 유엔과 모든 나라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판결 후에 있었던 '정의와 책임' 국제회의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토론주제로 떠올라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추모관, 자료관과 교육관 등의 건립이 시급해 보이며, 남북한 협력에 기반한 남북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향방문과 북한에 위치한 위안소, 방문조사,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연대 피해 10개국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셋째, 유사한 국제범죄에 대비하여 국제연대의 강화와 국제법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판결 후에 열린 국제회의에서 다룬 여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관련된 주제였다. ICC는 강간, 강제매춘 등 주로 여성에 대한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법정이다. ICC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판결 후에 열린 국제회의에서 다룬 여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관련된 주제였다. ICC는 강간, 강제매춘 등 주로 여성에 대한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법정이다. ICC의 설립은 이제 여성에 대한 범죄는 국제적으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미 2, 3년 전에 거대한 국제여성기구가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자는 안에는 139개국이 싸인했고 47개국이 관련법을 인준했다고 한다. 60개국이 인준하면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2, 3개월 안에 인준이 되리라 예측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 대비하여 국제연대와 여성 국제법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축적되어야겠다는 것이다. 2000년법정을 전후로 일본에서는 위안부와 관련한 연구와 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성과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이번 판결에서 군위안부의 문제가 성노예제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식민지강점 아래의 우리나라 상황의 특수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군국주의와 전시강간의 문제로 몽둥그려져 다루어졌고 '마파니케의 강간'이 부각된 점이 아쉬웠던 점이었는데, 이것도 다 우리 연구의 부족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DB화, 연구지원의 확대와 연구인력 저변의 확대를 통한 심도 깊은 연구가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심영희 2001 "2000년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성과 사회 12호.